#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60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성일종・이종배・장동혁

고동진 • 인요한 • 윤상현

강선영 · 서지영 · 김상욱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 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 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

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대책)"을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을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로, 같은 항 단서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기준 면적대 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 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제3조(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 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u>재</u>해 이전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대책으로-----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이 법에 따른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및「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신 설></u>

## ⑤・⑥ (생략)

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
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
년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
며, 품목별 피해 금액 및 상업
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 ⑧제7항까지의</u>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	
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u>.</u>
<u>⑧</u>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